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제안이유

-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문 띄어쓰기 시행
-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수정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6.3.23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및 2005.3.21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6. 22

보고자 : 김 찬 재